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개정사항

- 노면요철포장 편 -

(2011. 07)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부분개정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ge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8	개정(안), 2011	비고
628	<p>9. 노면요철포장</p> <p>9.3. 설치 및 구조</p> <p>9.3.1 설치장소</p> <div data-bbox="212 518 1059 6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노면요철 포장은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저하됨이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p> </div> <p>【설 명】 노면요철 포장은 도로의 종류와 차로 수 등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교량 및 터널구간은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장대교량의 경우에는 교량 진입부에 차선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등에서는 설치여부와 노면요철 포장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길어깨 주행이 예상되는 진·출입구간 및 전후 200m 구간에는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길어깨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에는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를 위해 포장두께가 최소 60mm 이상이어야 하며,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길어깨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공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하도록 한다. 설치 대상구간은 도로관리청에서 차로 이탈 등의 차량 단독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한다.</p>	<p>9. 노면요철포장</p> <p>9.3. 설치 및 구조</p> <p>9.3.1 설치장소</p> <div data-bbox="1090 518 1937 6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노면요철 포장은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저하됨이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p> </div> <p>【설 명】 노면요철 포장은 도로의 종류와 차로 수 등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교량 및 터널구간의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나, 중앙선을 노면표시(복선)만 설치하여 중앙선 침범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장대교량의 경우에는 교량 진입부에 차선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등에서는 설치여부와 노면요철 포장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길어깨 주행이 예상되는 진·출입구간 및 전후 200m 구간에는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길어깨나 중앙선(복선) 부분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에는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를 위해 포장두께가 최소 60mm 이상이어야 하며,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길어깨 및 중앙선(복선)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공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하도록 한다. 설치 대상구간은 도로관리청에서 차로 이탈 등의 차량 단독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한다.</p>	
629	<p>9.3.2 설치위치 및 간격</p> <div data-bbox="212 1278 1059 138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바깥차선에 가깝게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p>9.3.2 설치위치 및 간격</p> <div data-bbox="1090 1278 1937 138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바깥차선에 가깝게 설치하거나, 중앙선(복선) 내에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절삭형의 경우는 중앙선(복선)에 설치하지 아니 한다.</p> </div>	

page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8	개정(안), 2011	비고
632	<p>【설 명】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위치는 길어깨 폭,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여부 등 도로환경에 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설계편람에서는 노면 요철 포장을 차도의 포장면으로부터 최소 30c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속도가 낮은 지방부 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차로를 이탈한 차량이 복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면 요철 포장은 최대한 바깥차선에 가깝게 설치한다.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길어깨 폭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검토를 통해 바깥 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p> <p>도로설계편람에서 노면 요철 포장의 설치간격은 연속형과 단속형의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속형의 경우 홈간의 간격은 20~30cm로 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기본 구간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단속형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p> <p>국외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결로의 출입구와 교차로 등 차량의 길어깨 주행이 예상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연속형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에서도 노면 요철포장의 경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속형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p> <p>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에 설치하는 노면요철 포장은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통행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속형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p> <p>9.4. 시공</p> <p>노면요철 포장은 길어깨 노면에 설치하되 종류에 따라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전용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설 명】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위치는 길어깨 폭,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여부 등 도로환경에 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설계편람에서는 노면 요철 포장을 차도의 포장면으로부터 최소 30c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속도가 낮은 지방부 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차로를 이탈한 차량이 복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면 요철 포장은 최대한 바깥차선에 가깝게 설치한다.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길어깨 폭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검토를 통해 바깥 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p> <p>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포장시, 포장의 이음매는 중앙선 혹은 차선에 위치하며 이곳으로 빗물이 스며들면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삭형 노면요철 포장은 중앙선에 설치를 금한다.</p> <p>도로설계편람에서 노면 요철 포장의 설치간격은 연속형과 단속형의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속형의 경우 홈간의 간격은 20~30cm로 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기본 구간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단속형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p> <p>국외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결로의 출입구와 교차로 등 차량의 길어깨 주행이 예상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연속형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에서도 노면 요철포장의 경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속형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p> <p>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에 설치하는 노면요철 포장은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통행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속형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p> <p>9.4. 시공</p> <p>노면요철 포장은 길어깨 노면 및 중앙선(복선) 내에 설치하되 종류에 따라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전용장비를 사용한다.</p>	